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3.

발 의 자 : 전현희 · 김영환 · 홍기원
고동진 · 인요한 · 채현일
김영배 · 윤종균 · 한지아
김병주 · 추미애 · 이성운
박상혁 · 김동아 · 서명옥
진선미 · 최기상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의료법인·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,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.

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,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

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,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33조의4 신설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(조산사와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회의 분회(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분회를 말하며,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분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부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, 분회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개설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⑫ 분회는 제1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의 접수 및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사실을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⑬ 제11항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설신고의 수리를, 시·도지사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.

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4(의료기관 개설 교육)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(조산사와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1.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
2. 의료윤리 및 경영윤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중앙회의 장은 그 교육을 각 중앙회의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설신고의 수리를, 시·도지사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개설 등) ① ~ ⑩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3조(개설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⑪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(조산사와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회의 분회(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분회를 말하며,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분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부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, 분회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개설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⑫ 분회는 제11항에 따른 의료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<신 설>

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
신청 내역의 접수 및 개설자격
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사실을
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⑬ 제11항에 따라 개설신고 또
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분회
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
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설
신고의 수리를, 시·도지사는
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.

제33조의4(의료기관 개설 교육)

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
관을 개설하려는 자(조산사와
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
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법인
의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보건
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
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
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
여야 한다.

1.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
한 사항

2. 의료윤리 및 경영윤리에 관
한 사항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
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
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사항

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
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
경우 각 중앙회의 장은 그 교
육을 각 중앙회의 지부 또는
분회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
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
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·
군수·구청장은 개설신고의 수
리를, 시·도지사는 개설허가를
할 수 없다.